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9회 제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1. 6. 10. (목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【감사담당관 소관】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-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-

검 토 보 고

1. 안 건 명

-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: 2021년 5월 21일(금)
-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
3.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

- 2021년 5월 24일(월)

4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(결산)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82조(결산승인)
-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 (예비비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I 일반회계 세입 결산

(단위: 원)

구 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	수납액	징수율
감사담당관	-	405,130	405,130	100%

※ 징수율 :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

II 일반회계 세출 결산

1 부서별 세출결산

(단위: 원)

구 분	예산현액	지출액	이 월 액	보조금 환급금	집행잔액	집행률
감사담당관	160,067,000	117,984,350	0	0	42,082,650	73.71%

※ 집행률 :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

2 집행잔액 원인분석

(단위: 원)

구 분	집행잔액	집행잔액원인별 금액					
		보조금 정산잔액	예산 절감액	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	낙찰자액	지출잔액	예비비
		0%	7.45%	0%	0%	92.55%	0%
감사담당관	42,082,650	0	3,136,000	0	0	38,946,650	0

3 집행률 저조사업

(단위: 원)

부서	세부사업명	예산현액 가	지출액 나	이월액 다	보조금 반 라	집행잔액 가-나-다 -라	집행률 (나/가)
감사 담당관 (4건)	고객만족 행정	9,540,000	6,620,590	0	0	2,919,410	69.40%
	공익신고 운영	5,775,000	2,663,500	0	0	3,111,500	46.12%
	갈등관리 운영	7,830,000	3,123,400	0	0	4,706,600	39.89%
	기 본 경 비	55,772,000	38,467,260	0	0	17,304,740	68.97%

4 예산 전용 현황

(단위: 건, 원)

부서	세부사업	전용금액	사유
감사 담당관	투명하고 신뢰받는 구 정 운 영 (사 무 관 리 비)	1,680,000	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전용

III 검토의견

1 일반회계 세입·세출 결산

-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0만 5,130원으로 징수율은 100%임.
-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6,006만 7천 원이며, 지출액은 1억 1,798만 4,350원으로 집행률은 73.71%에 해당되고, 집행잔액은 4,208만 2,650원임.

-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6.29%이며, 예산절감액 313만 6천 원(7.45%)이며, 지출잔액은 3,894만 6,650원(92.55%)임.
- 집행률 저조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70% 미만인 사업으로 집행률이 39.89%인 갈등관리 운영사업 등 총 4건임.
-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청렴시책 추진을 위해 168만 원을 전용하였음.

2] 검토의견

- 검토의견으로는
2020년 감사담당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1개 정책사업목표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,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 등 2개 단위사업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결과 성과지표 100%를 달성하였으나,
- 갈등관리 운영사업은 2019년 신규 편성된 이후로 계속 집행률이 50%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, 전년도 지출 실적을 감안한 예산 집행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- 특히, 코로나19 이후 “갈등관리전문가 자문회의”, “갈등관리 교육” 등의 오프라인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에서의 전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또한,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과를 사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평가와 더불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